영등포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고기판 의원 대표발의】

**2020. 5. 11.**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209호로 2020년 4월 1일 고기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 제5조)

나.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6조)

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조치 규정
(안 제10조 ~ 제16조)

라.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및 소독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7조 ~ 제19조)

마. 방역관, 역학조사관 임명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 21조)

바. 교육 및 홍보 (안 제 22조)

사. 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시설지원, 손실보상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 23조 ~ 28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편성

다. 입법예고(2020.4.9.~4.13.) 결과: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신·변종 감염증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확진 환자가 지역을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격리 조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28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구청장, 의료인, 구민

등의 책무와 권리 및 의무사항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역학조사, 소독의무 사항, 정기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기관 설치에서 감염병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고,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을, **안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해야 할 의무와 그에 따른 권리를, **안 제5조(구민의 관리와 의무)**는 감염병 환자의 피해보상 등 구민의 권리와 감염병 발생 시 협조해야 할 구민의 의무를 명시한 것이며,

- **안 제6조 ~ 안 제11조**까지는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 역학조사, 정기예방접종,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2조 ~ 안 제19조**까지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관리 및 그 방법에 관하여 사안별로 규정하였음.

- **안 제20조 ~ 안 제21조**까지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의 임명에 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교육, 홍보, 캠페인 등 구민에 대한 홍보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23조~ 제28조**까지는 민간의료인력·기관 등에 대한 경비 및 시설지원, 손실보상과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표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 확산되어 구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함에 따라,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 과정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위기를 교훈삼아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 및 관리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시의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보이며, 앞으로 구에서는 조문별 실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마련하여 감염병 예방에 철처를 기하여야 하겠음.

# 참 고 자 료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2의2.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

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영등포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고기판 의원 대표발의】

2020. 5. 11.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210호로 2020년 4월 1일 고기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응급의료장비를 갖춘 시설에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장비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입법예고(2020.4.9.~4.13.) 결과: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심장충격기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시 설치장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에 대한 안내도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구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제안된 안임.

○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와 응급의료장비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 제3조(응급의료 지원) ① ----------.<br>1.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와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의 설치 |

⇒ 보건복지부의 관리지침과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화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제4판, 2019.2) 4쪽**

□ **설치 안내 표시**

○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치 안내표시를 부착

○ 건물 내부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유도 안내판 설치

**※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2019.8.5.)**

○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안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할 것.

- 안 제6조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6조(장비의 관리) 제3조제2항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영등포구 내 자동심장충격기는 총 374대로 법 제47조2항에 따른 의무시설 43개소 60대, 비의무시설 256개소 314대이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도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지원 기준을 지역 내에서 자체 수립하고 해당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자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음.

특히 우리구에서 최근 3년간 구·시비 지원을 받아 설치한 32개소의 자동심장충격기는 모두 비의무시설로 해당 시설은 법령과 조례에 장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바, 본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여하였음.

**※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제4판, 2019.2.) 14쪽**

**□ 예산 지원 범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설치의무대상 시설은 아니나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

○ 지원 기준을 지역 내에서 자체 수립하고, 해당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자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

*** 지원 시 고려 사항**

① 관리인력 확보의 적정성 및 향후 소모품 교체 등 장비 관리 계획
② 거주 인원들의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 노력
③ 설치 규모
④ 구성인원의 인구학적 특성
⑤ 기타 지자체 장이 우선 고려하는 보건 정책 목표 등

○ 검토 결과

-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약 70%가 정상 회복한다는 통계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용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짐.

-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는 설치 위치에 대한 정보 부족이 있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응급 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찾지 못해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에 설치 위치 명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자동심장충격기의 낮은 사용률을 고려할 때,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 이용자가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의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4(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

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시·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의13서식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의14서식의 응급장비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15서식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에 따라 응급장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법 제4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5호의16서식의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